

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) 일부개정법률안

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”를 “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매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중 “주택매수”를 각각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주택매수”를 각각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”를 “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매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주택매수”를 각각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제4항”을 “제5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매수대상”을 “매수 및 주거환경개선 대상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”를 “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 등의 청구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주택매수의 청구지역)”을 “(주택매수 등의 청구지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매수”를 “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주택매수 청구지역에”를 “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”로, “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부터”를 “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부터”로, “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의”를 “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주택매수”를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등)”을 “(주택매수 등의 청구 대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1항”을 “법 제5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“주택매수”를 각각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

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1호를 준용한다.

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주거환경 개선비용의 산정기준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은 승인등완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 청구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그 승인등완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완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공고 등(이하 이 항에서 “사업공고”라 한다)으로 주거환경 개선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서 그 주택의 주거환경개선 청구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환경 개선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제2호 중 “주택매수”를 “주택매수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보상계획의 수립)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<u>주택매수</u> 의 협의를 위한 계획(이하 “보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3조(보상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주</u> <u>택매수 등</u> ----- ----- -.
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재산적 보상 및 <u>주택매수</u> 의 청구 기간, 방법 및 절차	5. ----- <u>주택매수 등</u> -----
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.
1. 지형도(축척이 1,200분의 1부터 2,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):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	1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주택매수</u> 청구지역의 경계선	다. <u>주택매수 등</u>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상계획의 확정·공고 등)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	제4조(보상계획의 확정·공고 등) ① -----

보상지역 및 <u>주택매수</u>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, 지정 또는 인·허가(이하 “승인등”이라 한다) 중 최초 승인등이 있는 날(이하 “승인등 완료일”이라 한다)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<u>주택매수</u>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(이하 “토지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의 합의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	----- <u>주택매수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적 보상 또는 <u>주택매수</u> 청구 신청서(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한정한다) 및 보상계획의 내용을 승인 등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,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5. 그 밖에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<신 설> ② ~ ④ (생 략) <신 설>	5. ----- 주택매수 등 ----- ----- -----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1호를 준용한다. 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 제11조의2(주거환경 개선비용의 산정기준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은 승인등원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 청구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그 승인등원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원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	업에 대한 공고 등(이하 이항에서 “사업공고”라 한다)으로 주거환경 개선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서 그 주택의 주거환경개선 청구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환경 개선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제3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사업 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(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 략)	제3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
--	--	---	---

2. 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에 관한 사무 3. (생 략)	2. ----- 주택매수 등 ----- 3. (현행과 같음)
---	--